

의안번호	2212275
의 퇴 인	김영진 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E44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적연금소득 및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 사적연금 종신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4% → 3%) ○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구간 신설 및 세율 인하 -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구간 신설 및 연금외수령의 50% 세율 적용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제129조제1항 (원천징수세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인하

- 개정안은 종신수령 형태로 사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4%에서 3%로 인하하려는 것으로,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며, 1,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3~5% 또는 종신수령하는 경우에는 4%를 적용하되,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표 3]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구 분		세 율	
		현 행	개정안
① 연금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현행과 같음)
	70세 이상 80세 미만	4%	(현행과 같음)
	80세 이상	3%	(현행과 같음)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4%	3%

주: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낮은 세율 적용(예시: 80세 이상 종신수령의 경우 3% 세율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연금수령자 나이별·수령형태(종신계약 여부)별 연금지급액 등 원천징수 현황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1~2023년 연금수령자의 나이별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종신계약과 종신계약이 아닌 경우가 구분되지 않은 자료임¹⁾

[표 4]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70세 미만	538,879	21,438	1,055	636,824	24,391	1,199	742,120	26,602	1,307
70세 이상 80세 미만	39,325	1,515	60	49,697	1,743	69	69,969	2,164	86
80세 이상	1,621	101	3	2,464	117	4	4,337	163	5
계	579,825	23,054	1,119	688,985	26,251	1,272	816,426	28,930	1,399

주: 1.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외

2. 종신계약 여부에 따른 인원, 연금지급액 및 소득세액 실적이 구분되지 않은 자료임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 구간에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50%’를 적용하는 등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소득세

1) 국세청은 사적연금 수령형태(종신계약 여부)별로 세분화된 원천징수 현황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임

수의 감소가 예상됨

-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가 분리과세됨
 - 분리과세 세율은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일시금, 중도인출 등)하였을 경우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의 60% 또는 70%를 적용

[표 5]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현 행			개정안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u>20년 초과</u>	<u>연금외수령</u> <u>원천징수세율의 50%</u>

- 개정안에 따른 추계를 위해서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구간의 인원, 연금지급액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해당 자료의 습득에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

- 참고로, 2021~2023년간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원천징수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인원	연금 지급액	소득 세액
연금 실제 수령 연차	10년 이하	96,891	13,170	899	130,492	17,526	1,194	174,159	20,919	1,355
	10년 초과	304	17	0.3	468	25	1	903	52	1
계		97,195	13,182	900	130,960	17,550	1,195	175,062	20,971	1,356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